

의안번호	제2849호
의 결	2024. . . .
연 월 일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이정숙 의원 등 3인
발의연월일	2024. 11. 8.

고성군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이정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49
----------	------

발의연월일 : 2024. 11. 8.

발의자 : 이정숙, 김원순, 김희태
의원(3인)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고성군에 소재한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경사로 설치 지원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경사로 종류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설치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사. 신청인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아.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나. 입법예고: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4-48호

- 예고기간: 2024. 11. 8. ~ 2024. 11. 13.(5일간)

-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 의견 없음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고성군에 소재한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경사로”란 장애인 등이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주”란 소유주 또는 관리자(시설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등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지원에 대한 적극적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 보장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경사로 설치 지원) 군수는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주에게 경사로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한다.

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通行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
2. 경사로 견적의 타당성

③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 및 정산) 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완료한 경우
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1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신청인의 의무) ① 신청인은 제6조에 따라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는 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한다.

② 신청인이 이미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변경 또는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군수는 효율적인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정지 요구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고성군수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비용 지원

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항목: 신청서 기재사항(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번호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비용 지원 기간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설주: (서명 또는 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 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설치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한다.